

법제처 심사 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 9.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 완화 등 출원편의 제고와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글자체 디자인의 한글·한자 지정글자 구성 및 도면 개선(별표1 개정안)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 시 제출하는 한글·한자의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하여 출원인의 출원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심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디자인의 도면으로 3D도면 파일 제출 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서식 기재방법(안내문) 신설(별지 제1, 2, 3, 4, 8호 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일부개정안)

출원인이 제출하는 3D도면 파일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파일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다른 3D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2D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신설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동의 여부 및 사전 동의 여부 명확화(안 제13조 제2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동의 여부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함

라. 시행규칙 본칙과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의 일치(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일부개정안)

시행규칙 본칙의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관련 서식에 이를 명확히
함

마. 서식 기재방법의 인용 항목 오기재 사항 정정(안 제24조제1항제13호)
제24조제1항제13호의 서식 기재방법 인용 항목을 정정하여 관련
인용 항목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해서는”을 “대해서 지식재산처
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로, “확인”을 “확인하는 것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42조제
1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는 이를 확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3호 중 “기재방법 제18호아목”을 “기재방법 제19호아목”
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제1호 제목의 ‘지정글자 500자’를 ‘지정글자 209자’로
하고, 같은 호의 【지정글자 도면 1】 과 【지정글자 도면 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의 【지정글자 도면 3】 내지 【지정글자 도
면 5】 를 삭제한다.

【지정글자 도면 1】

가갸값개거게결굵과
관광괘교권궤케그극
근금급기깃께끝김넌
냐너네녀노늬누눈놀
느는늣니다닭대돼됐
되된될뒤뒋든들듭دت
등똥똥랴래러럼럽렁
렸룩르리린림립막매
먹멧모몹몹물미민민
바박밖발버봄빌빚빠
사삼새생서션소손쇄
숨쉬쉽스슨슬승시식
싫싫썩썩

【지정글자 도면 2】

얹애야약양애어엷억
역연열오웁와완왔왜
외요용운워윈월윳웬
위윗윙으은을윙음읍
의익인일임잇잇자중
죄질집짧쫓참처첫첫
최추출충칙커کم공큰
클터터특틀파판패퍼
편평폐피하한핥향형
호혼화확환활황회획
훈훈흑흘희힌힘

별표 1의 제5호 중 제5호 제목의 ‘지정글자 900자’를 ‘지정글자 310자’로 하고, 같은 호의 【지정글자 도면 1】 과 【지정글자 도면 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의 【지정글자 도면 3】 내지 【지정글자 도면 9】 를 삭제한다.

【지정글자 도면 1】

可干甘甲更車犬見曲
工果久九口求弓金及
其己乃內女年丹單大
刀東力立馬末面母毛
木目戊文門勿未米民
白兵丙本夫父不非飛
事史四士巳山上生西
夕石世小手水承示食
申臣身心十氏我也羊
言永五烏玉瓦曰王用
于又牛雨月由酉肉乙
衣二以已而耳人一日
入子自長朱才典田丁
井竹中重之止至且冊
尺千川寸丑齒七土八
貝片皮必匹亥革乎戶
下火凶

【지정글자 도면 2】

假價家歌街角講改開
舉健潔庚慶競經耕驚
界鷄考功過關教救國
君歸勤既氣端對獨動
同頭郎旅練烈勞綠柳
流理滿望勉武無尾發
拜番病步佛比鼻使殺
賞先船選鮮成省聲速
收數秀純習乘勝新實
兒惡仰哀野弱養嚴餘
與逆然研英藝誤屋憂
遇運怨爲柔醫印引作
將赤戰電節絕靜第製
兆助祖從終鐘晝增直
盡眞辰進着察參處妻
體初最春出忠就致快
打宅特判便篇風漠韓
含害鄉虛惠婚華患興
黑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8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3D 도면은 심사전용 뷰어에서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

은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전용 뷰어에서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3D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2D 도면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1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3D 도면은 심사전용 뷰어에서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전용 뷰어에서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3D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2D 도면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첨부서류】 제2호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8호 참조)”를 “제41조에 따른 출원인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으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각 1통 (기

재방법 제19호 참조)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3D 도면은 심사전용 뷰어에서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전용 뷰어에서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3D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2D 도면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3D 도면은 심사전용 뷰어에서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전용 뷰어에서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3D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른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2D 도면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디자인을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3D 도면은 심사전용 뷰어에서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전용 뷰어에서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3D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2D 도면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생략)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u>대해서는</u>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확인</u>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 ----- <u>대해서</u> <u>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u> ----- <u>확인</u> 하는 것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는 이를 확인-----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조, 제64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 -----

[illegible]

1. ~ 12. (현행과 같음)

13. -----

----- 기재방법 제19
호아목-----

14. ~ 1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